

붙임 1. 군포시육아종합지원센터 아이사랑놀이터 운영요원 채용 공고

군포시육아종합지원센터 아이사랑놀이터 운영요원 채용 공고

군포시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는 아이사랑놀이터 운영 지원 업무를 위한 운영요원 채용을 아래와 같이 실시하고자 합니다.

2020년 9월 7일
군포시육아종합지원센터 센터장

가. 채용분야 및 자격

채용분야	운영요원(아이사랑놀이터)
채용형태	계약직 *평가에 따라 재계약 및 무기계약직 전환 가능
채용인원	2명
근무시간	매주 월~금(09:00~18:00), 주 40시간
근무지	아이사랑놀이터 상상마을점(군포시 수리산로 112)
주요업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이용자 예약관리, 이용 상담- 영유아 놀이, 체험프로그램 운영- 시설 안전, 위생, 청결 관리- 기타 센터장이 지정한 업무 <p>* 2명이 함께 근무할 예정임</p>
지원자격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자격무관- 보육교사 자격증 소지자 우대- 전(前)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요원 및 보육업무 경력자 우대

나. 전형방법 및 일정

- 1) 전형방법 : 서류전형 및 면접전형
- 2) 전형일정

구분	전형일정	비고
채용공고 및 서류접수	2020. 09. 07.(월) ~ 09. 18.(금)	18:00도착분에 한함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2020. 09. 21.(월)	홈페이지 공고
면접전형	2020. 09. 23.(수)	1차 합격자에 한함
최종 합격자 발표	2020. 09. 25.(금)	홈페이지 공고 및 개별통보
근무시작일	2020. 10. 12.(월) 예정	-

※ 전형일정은 군포시육아종합지원센터 내부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

다. 구비서류 및 접수방법

1) 구비서류

구분	제출서류	비고
응시자 공통	<p>- 지원 시 제출서류</p> <p>① <붙임서식> 지원서 및 자기소개서</p> <p>②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1부 포함</p> <p>- 면접 시 제출서류 (면접대상자에 한함)</p> <p>① 이력서</p> <p>② 자격증 사본 1부(해당자에 한함)</p> <p>③ 경력증명서 1부(3개월 이내 발급, 해당자에 한함)</p> <p>④ 주민등록등본 1부(3개월 이내 발급)</p> <p>* 주민등록번호 수집금지에 따라 주민번호 뒷자리를 비공개로 표시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p> <p>* 입사지원서 및 자기소개서는 제시된 서식 사용</p>	접수 시 '운영요원- ○○○(이름)' 으로 작성요망

2) 접수방법 : 온라인 접수(gunpo2010@daum.net)혹은 방문 및 우편 접수(경기도 군포시 수리산로 110, 3층)

*방문접수 시 월~금 09:00~18:00에 가능(휴관일 제외)

*우편접수 시 봉투 곁면에 '운영요원 지원 OOO(이름)'기입

라. 합격자 발표

- 1차(서류전형)합격자 : 면접일정 개별통보 및 홈페이지(<http://www.gpscc.or.kr/>) 공지
- 2차(최종)합격자 : 개별통보 및 홈페이지(<http://www.gpscc.or.kr/>) 공지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통보가 이루어지며 불합격자는 통보하지 않음**

마. 기타사항

- 다음의 결격사유가 있는 자는 채용할 수 없습니다.

영유아보육법 제1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1. 미성년자 ·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정신보건법」 제3조제1호의 정신질환자
3.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마약류에 중독된 자
4.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5. 금고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20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6.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다만, 「아동복지법」 제3조 제7의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에는 그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제45조에 따라 어린이집의 폐쇄명령을 받고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8. 제54조에 따라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또는 「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로 벌금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9. 제23조3에 따른 교육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영유아보육법 제46조나 제47조에 따라 자격정지 중인 자

영유아보육법 제48조제1항에 따라 자격이 취소된 후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자격 재교부 기한이 경과 되지 아니한 자

-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사항이 허위일 경우 선발대상에서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임용 후 3개월의 수습기간을 거쳐 업무수행 등의 전반적인 능력이 부족하다고 판단될 경우 임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적격자가 없을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심사와 관련된 평가내용 등 관련 모든 자료는 비공개로 합니다.
- 지원자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채용서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채용서류의 반환 등

1. 구인자는 구직자의 채용 여부가 확정된 이후 구직자(확정된 채용대상자는 제외한다)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본인임을 확인한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제7조제1항에 따라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나 구직자가 구인자의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제1항에 따른 구직자의 채용서류 반환 청구는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여야 한다.
3. 구인자는 제1항에 따른 구직자의 반환 청구에 대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채용서류를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구인자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채용서류가 멸실된 경우 구인자는 제1항에 따른 채용서류의 반환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
4. 구인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반환의 청구기간이 지난 경우 채용서류를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채용서류를 파기하여야 한다.
5. 제1항에 따른 채용서류의 반환에 소요되는 비용은 원칙적으로 구인자가 부담한다. 다만, 구인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채용서류의 반환에 소요되는 비용을 구직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바. 문의: 김희진 팀장 ☎ 031-393-0236